

영천시와 대구대학교간의 관·학 교류 협정서

대구대학교와 영천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상호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한 관·학 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1조(목적) 이 협정은 대구대학교와 영천시간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정내용) 대구대학교와 영천시는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1. 대구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인력을 영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한다
(자문·연구위원, 용역사업, 시지간행, 농업기술, 문화재 조사 등 관심분야)
2. 영천시는 국가시책사업인 대구대학교의 BK(두뇌한국)21사업을 지원한다.
3. 대구대학교는 영천시의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을 지원하고, 영천시의 여성대학(사회교육원) 교육프로그램의 주관대학으로 참여한다.
4. 영천시는 대구대학교 인근(영천시관내)지역의 도로개설 등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5. 대구대학교는 영천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인적지원(학생 동아리, 응원단, 체육부 등)과 시설의 편의를 제공한다.
6. 영천시는 대구대학교가 영천지역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한다.
7. 대구대학교는 영천시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에 협조한다.
8. 영천시와 대구대학교는 학술회 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의 교환, 기타 행정정보의 교환에 상호 협조한다.
9. 영천시와 대구대학교는 상호 시설물에 대하여 무상으로 편의를 제공한다.

10. 영천시와 대구대학교는 상호발전과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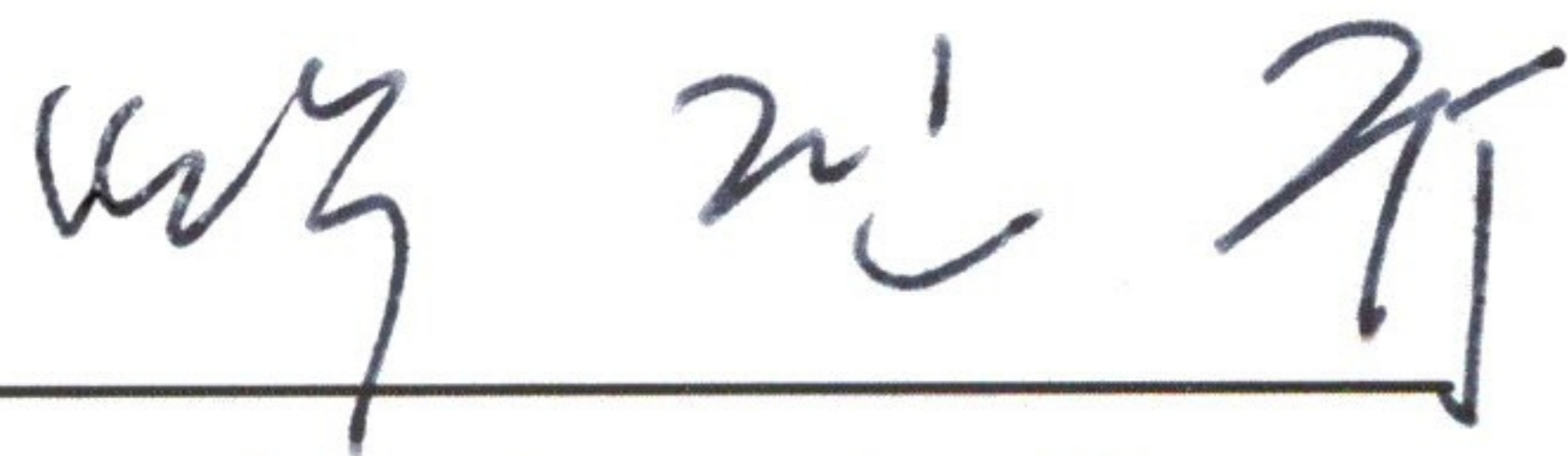
제3조(관·학 운영위원회 구성) 양 기관의 협정사항 실행을 위하여 필요시 양 기관의 관계자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신의 성실의 원칙) 1. 본 협약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며,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의 대표자간 협의로 결정한다.

2. 이 협약서는 1부씩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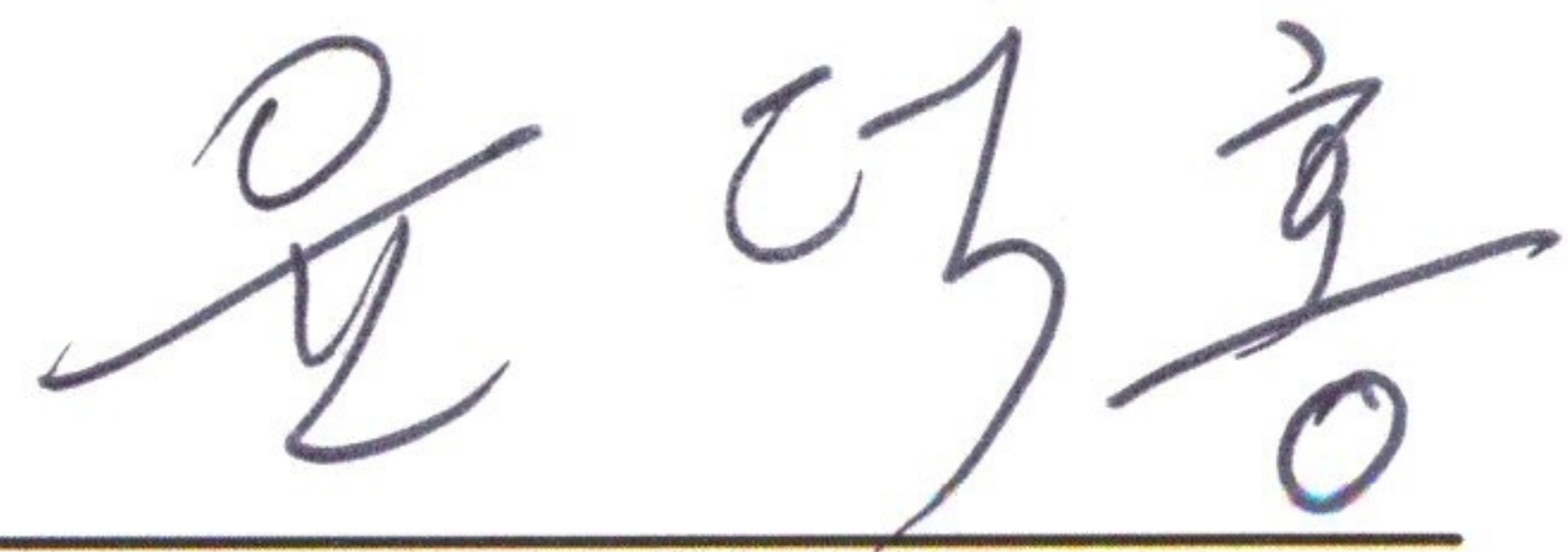
제5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 일방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5년의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2000. 12. 26



영 천 시 장

박 진 규



대구대학교 총장

윤 덕 홍